2019년도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자 : 2019. 8. 14.(수요일)

o 방　　법 : 온라인심의

o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
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응준(분과위원장)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・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안건 및 결과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건(안건번호 제2019-92551호~92650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본건 심의대상은 영화 등의 불법복제물로서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으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B 위원 : 92551호부터 92650호까지 100건의 경우 <어벤저스: 엔드게임>, <기생충>, <알라딘> 등 최신 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- C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국내외의 영화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기생충(2019), 악질경찰(2019), 알라딘(2019), 어벤져스 엔드게임(2019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2019년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8. 14.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임진모

위원 박성호